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교사 인식과 요구 : 영재교육기관 유형별 사례연구

이 경 진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최 진 영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기관을 시도교육청 운영 영재교육원, 지역공동영재학급,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기관의 교사들을 면담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평가준거들 중 3개의 평가준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특히 ‘운영인력의 전문성’과 ‘자문위원회 활용’의 경우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교사들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투입평가준거들 중 13개의 평가준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특히 ‘교육 지원 인력 확보’, ‘교구 및 자료 제공’의 경우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교사들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과정평가준거들 중 2개의 평가준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특히 ‘교강사 전문성 신장 노력’의 경우는 영재교육기관에 따라 교사들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넷째, 성과평가준거들 중 4개의 평가준거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특히 ‘차년도 예산 확보 계획’의 경우는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교사들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를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제어: 미술영재교육과정, 교육과정평가, 평가준거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를 근거로 하여 영재교육을 실행해 왔

교신저자: 최진영(cjy@ewha.ac.kr)

* 본 논문은 문화체육관광부 기금(2012) 지원에 의한 ‘예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지표 개발’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

다. 2008년에 0.72%였던 영재교육대상자 비율은 2011년에 1.59%로 증가되었고, 영재교육기관은 2008년에 총 1,260개였으나 2011년에는 총 3,943개로 최근 4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서예원 외, 2012). 이와 같이 영재교육기관은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예술분야의 영재교육기관 역시 2008년에 영재교육원이 29개, 영재학급이 32개로 총 61개였으나, 2011년에는 영재교육원 51개, 영재학급 105개, 총 156개로 4년간 2.5배 정도 증가하였다(서예원, 이재분, 박지은, 2011).

이러한 양적 증가는 영재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양적 증가가 교육의 질을 담보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질 관리를 위한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이는 영재교육 뿐 아니라 일반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육과정 개발이나 실행 연구 분야에 비해 교육과정 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 평가 분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으며, 다른 분야의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영재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영재교육과정 개발, 편성·운영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평가 역시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수학·과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술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영재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예술영재는 수학·과학 영재와는 다른 능력과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영재교육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의 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예술영재교육 중에서도 전국 영재교육 분야별 교육과정 수가 가장 많은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미술영재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당위성을 갖는다면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는 미술이라는 예술분야에 대한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다양한 맥락에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이경진, 김선아, 2012). 무엇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가는 미술영재교육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엇을 평가하는지와 관련된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를 연구 주제로 하였다.

미술영재교육에서 있어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현재의 실천을 바탕으로 미래에 어떤 방향의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의 실체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교육과정 분야에 대한 평가는 이미 진행되어 온 영재교육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영재교육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 있어 평가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이경진, 김선아, 2012). 그렇다면 특정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관점보다는, 평가를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으로 보고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과정을 평가하여 교육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관점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미술영재교육기관에서는 미술영재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준거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교육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술영재교육기관에서, 구체적으로는 미술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기관은 유형이 분리되어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영재교육기관 유형은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으로 나눌 수 있다. ‘영재학교’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전문분야로 특화되어 있는데, 예술 분야에 대한 영재학교는 아직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영재학급’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 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으로(2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 급 학교에 교과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설치·운영(7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영재교육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2조)으로, 시도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 예술, 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에서 설치·운영(8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차이가 있다. 영재교육원은 대학 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으로 구분되고, 영재학급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공동 영재학급과 방과 후에 해당학교 소속 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단위학교 영재학급으로 구분된다. 설치·운영 주체에 차이가 남에 따라 영재교육원과 지역공동 영재학급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나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을 담당하는 강사의 경우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25조와 26조에 의해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를 임용하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는 차이가 없다. 영재교육의 운영 시기는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 관계없이 평일 방과 후가 가장 일반적이며, 토요일에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이정규 외, 2007). 백경미(2012)의 연구에 의하면 미술영재교육 기관 유형별로 교육과정 구성내용이나 실행방식에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 역시 영재교육기관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개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술영재교육기관 중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영재교육원과 지역공동 영재학급, 단위학교 영재학급 담당 교사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기관유형별로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가적 수준에서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를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의 의미와 관점

‘교육과정 평가’라는 분야가 전문 분야로서 나타나기 시작한 즈음, Scriven(1967)은 평가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의 가치나 장점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대체로 이러한 정의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육과정 평가의 정의와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

Fitzpatrick, Sanders, Worthen(2011)은 평가를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평가 기준의 확인, 명료화, 적용을 통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의 가치(유용성과 장점)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 정의에서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의 장점이나 유용성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교육과정이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영재교육과정은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교육대상자의 차이는 일반교육과정과 영재교육과정을 차별화한다. 예술영재교육은 예술영재를 대상으로 하는데, Renzulli(1999)의 세고리 개념에 의하면 예술영재성은 예술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과 창의성과 과제집착력으로 이루어지고, Renzulli(1999)와 Gagné(2003) 등에 의하면 예술영재성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창의성을 강조하는 미술영재교육에 Csikszentmihalyi(2003)의 체계 이론을 적용한다면 미술영재교육의 목적은 분야, 영역,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창의적인 업적을 통해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잠재성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미술영재교육과정은 미술영재라고 판별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일련의 교육내용 및 방법의 체계라 할 수 있다(김정희, 강병직, 2011).

그러므로 미술영재교육과정을 평가한다는 것은 미술 영재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교육적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일련의 교육체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이정진, 김선아, 강병직, 최진영, 2012). 그리고 평가의 목적을 개선에 둔다면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의 목적은 미술영재들이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술영재교육과정이 계획되고 실행되며 미술영재들이 교육과정에서 기대한 목표를 제대로 성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획과 실행, 성과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된다. 또한 영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미술영재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변화와 더불어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의 목적에서 보자면, 미술영재교육과정을 평가하는 데에는 의사결정 지향 접근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Fitzpatrick 외(2011)에 의하면 교육과정 평가관점을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프로그램 또는 결과물(product)의 질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 지향 접근법’으로, 이 범주의 접근법에는 Eisner의 감식안과 비평으로 대표되는 전문기술 지향 평가와 Scriven의 소비자 지향 평가가 포함된다. 두 번째 범주는 프로그램의 특징 지향 접근법 즉 ‘목표 지향 접근법’으로, 이 접근법은 목표 기반, 기준 기반, 이론을 기반으로 한 평가관점들을 포함한다. 세 번째 범주는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지향 접근법’으로, 이 범주의 평가 접근법들은 평가의 역할이 이해당사자나 기관이 결정을 내리고 질을 개선하는 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네 번째 범주는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지향 접근법’으로, 이 범주에는 Stake의 반응 평가, 실질적 참여 평가, 발달 평가, 주도권 평가, 민주적 지향 접근법들이 포함된다.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에서는 교육의 개선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과정을 평가하여 평가관점이 더 적합하다. 미술영재 뿐 아니라 영재교육과정

을 평가하는 데에 의사결정 지향 접근법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영재교육과정 평가 관련 학자들에 의해서도 제시된 바 있다(이경진, 2012). 우리나라 영재교육기관 평가체제를 개발한 서혜에 외(2003) 역시 개별 영재의 요구와 운영의 효율성 및 사회적 호응과 지원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맥락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에 의사결정 지향 관점이 적합한 이유는 미술에서는 창의성을 개인의 능력보다는 사회맥락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Clark과 Zimmerman(2008)은 미술에서의 창의성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문화 혹은 교육적 기회 및 환경들에 의한 영향을 받는 학습된 복잡한 능력들의 종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미술영재교육과정을 평가할 때에는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 판단보다는 개선에 초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의사결정 지향 접근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모형 및 평가준거

의사결정 지향 접근법에 여러 가지 평가모형이 있다. 그러나 Provus(1971)의 불일치 모형(Discrepancy model)은 의사결정 지향 접근법에 의한 모형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그 핵심이 ‘목표 지향 접근법’에 기반한다. 또한 Renzulli와 Ward(1969)의 DESDEG 모형은 미술영재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창의성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기 어렵다. Davis와 Rimm(2004)의 모형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도식화하고 각 측면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은 자원의 투입과 교육의 과정, 그리고 산출된 성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각 측면들이 교육과정의 성공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해 준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개발한 우리나라 영재교육기관 평가모형(서혜에 외, 2003)은 Davis와 Rimm의 영재교육과정 평가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두 모형은 모두 의사결정 지향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투입, 과정, 성과를 평가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다. 따라서 미술영재교육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상황과 환경적 여건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2013)에서는 의사결정 지향 접근법의 대표적인 평가모형인 CIPP 모형을 기반으로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모형과 평가준거를 개발하였다. Davis와 Rimm 모형 및 KEDI 모형, 그리고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에서 개발한 모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황 평가를 별도의 평가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Stufflebeam(2005)이 제안한 CIPP 모형은 교육제도나 프로그램의 성장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며 주요 요구들을 더 잘 충족시키거나 가용자원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CIPP 모형에서 상황(Context)은 미술영재교육과정의 기관별, 지역별, 특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교육과정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의 전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미술영재교육과정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교육 목표는 프로그램의 투입, 실행, 산출물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상황평가를 별도의 평가영역으로 구분하여 예술영재교육의 사회적 필요성과 예술영재교육의 목표 및 내

용을 다차원적으로 구분하여 사회문화적 및 교육적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상황평가 부분은 일반적인 영재교육과정 평가의 내용과도 구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IPP 모형은 미술영재교육과정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관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CIPP 모형을 기반으로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2013)에서 개발한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 준거는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성과평가 각 부문에 걸쳐 ‘미술영재교육의 목표’, ‘교육기관의 운영 능력’ 등 총 12개 항목의 평가영역과, 각 평가영역별로 ‘미술영재교육의 사회적 요구 이해’, ‘미술영재교육목표에 대한 이해’, ‘미술영재의 특성 파악’ 등 총 27개 항목의 평가요소를 개발하였다. 각 평가요소 별 평가준거는 12개의 상황평가준거, 25개의 투입평가준거, 12개의 과정평가준거와 9개의 성과평가준거로 구성되었다.

< 표 1 >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요소와 준거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준거		
1. 상황평가	1.1. 미술영재교육의 목표	1.1.1.1. 미술영재교육의 사회적 요구 이해	1.1.1.1. 영재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파악 여부 1.1.1.2. 창의적 인재 육성의 필요성 인식	
		1.1.2. 미술영재교육목표에 대한 이해	1.1.2.1. 현대미술 동향과 미술영재 개념의 이해 1.1.2.2. 미술 잠재력 개발의 필요성 인식	
		1.1.3. 미술영재의 특성 파악	1.1.3.1. 학습자 요구 파악	1.1.3.1. 학습자 요구 파악
			1.1.3.2. 학습자 특성 파악	1.1.3.2. 학습자 특성 파악
			1.1.3.3.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 파악	1.1.3.3.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 파악
		1.2. 교육기관의 운영 능력	1.2.1. 교육기관의 비전과 발전 전략	1.2.1.1. 기관의 비전과 발전 전략 수립 여부
	1.2.1.2. 기관의 비전과 발전 전략 공유			1.2.1.2. 기관의 비전과 발전 전략 공유
	1.2.2. 운영 조직의 전문성		1.2.2.1. 운영조직의 체계성	1.2.2.1. 운영조직의 체계성
			1.2.2.2. 운영 인력의 전문성	1.2.2.2. 운영 인력의 전문성
			1.2.2.3. 자문위원회의 활용	1.2.2.3. 자문위원회의 활용
			1.2.2.4. 운영조직의 전문성	1.2.2.4. 운영조직의 전문성
	2. 투입평가	2.1. 선발	2.1.1.1. 추천 및 선정 요소의 다양성	2.1.1.1. 추천 및 선정 요소의 다양성
2.1.1.2. 선발기준의 적절성			2.1.1.2. 선발기준의 적절성	
2.2. 교육 프로그램 계획		2.1.2.1. 선발 방법의 적절성	2.1.2.1. 선정추천심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의 적절성	
		2.1.2.2. 다면평가·다단계 절차 여부	2.1.2.2. 다면평가·다단계 절차 여부	
		2.2.1. 교육목표의 적절성	2.2.1.1. 영재교육 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2.2.1.1. 영재교육 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2.2.2.1. 교육내용 구성의 연계성	2.2.2.1. 교육내용 구성의 연계성
2.2.2. 교육내용의 적절성	2.2.2.2. 영재교육 목표와의 연계성	2.2.2.2. 영재교육 목표와의 연계성		
	2.2.2.3. 창의성 및 실생활 문제해결 내용 선정 여부	2.2.2.3. 창의성 및 실생활 문제해결 내용 선정 여부		
	2.2.2.4.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내용 조직 여부	2.2.2.4.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내용 조직 여부		
	2.2.2.5. 교육내용의 적절성	2.2.2.5. 교육내용의 적절성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준거	
	2.2.3. 교육방법의 적절성	2.2.3.1. 교육방법의 다양성	
		2.2.3.2. 교육방법의 적절성	
		2.2.3.3. 개별화 교육 여부	
	2.2.4. 교육평가의 타당성	2.2.4.1. 평가방법의 다양성	
		2.2.4.2. 평가준거의 적절성	
		2.2.4.3. 평가결과의 환류	
2.3. 인적자원	2.3.1. 교강사의 전문성	2.3.1.1. 전문가 확보 계획 여부	
		2.3.1.2. 교강사의 전문성	
		2.3.1.3. 교강사의 질 관리 방안 수립 여부	
2.3.2. 지원 인력 확보	2.3.2.1. 교육 지원 인력 확보		
	2.3.2.2. 행정 지원 인력 확보		
2.4. 물적자원 및 재정	2.4.1. 교육시설 확보	2.4.1.1. 교육 공간 및 기자재 확보	
	2.4.2. 교구 및 자료 확보	2.4.2.1. 교구 및 자료 제공	
	2.4.3. 지역문화예술 자원 확보	2.4.3.1. 지역문화예술자원 협력 관계 구축	
		2.4.4. 재정 확보	2.4.4.1. 예산의 충분성
		2.4.4.2. 예산 편성의 적절성	
3. 과정 평가	3.1. 교육과정 운영	3.1.1.1. 학습자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별화	
		3.1.1.2. 수업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노력	
		3.1.1.3. 운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노력	
	3.2. 교수학습 방법	3.2.1. 교수학습 방법의 적절성	3.2.1.1. 교육목표 달성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 적용
			3.2.1.2. 학습자 특성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 적용
		3.2.2.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성	3.2.2.1.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 활용
			3.2.2.2. 학습양식별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
	3.3. 자원 활용	3.3.1. 인적자원 활용의 적절성	3.3.1.1. 교강사 전문성 신장 노력
			3.3.1.2. 학부모 소통 및 참여 여부
3.3.2. 물적자원 활용의 적절성		3.3.2.1. 교육 시설 및 기자재 활용의 적절성	
		3.3.2.2. 지역 문화예술 자원 활용의 적절성	
		3.3.2.3. 예산 집행 시기 및 방법의 적절성	
4. 성과 평가	4.1.1. 결과물 평가	4.1.1.1. 미술작품 등 산출물 평가	
		4.1.1.2. 결과물 전시 및 발표 실시	
	4.1.2. 교육의 과정에 대한 평가	4.1.2.1. 프로그램 목표 달성 여부	
		4.1.2.2. 학습자 능력향상 여부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준거
4.2. 만족도	4.2.1. 학습자 만족도	4.2.1.1. 학습자 만족도
		4.3.1.1. 개선방안 수립
4.3. 지속 가능성	4.3.1. 평가결과 환류	4.3.1.2.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
		4.3.1.3.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4.3.2. 예산 확보 계획	4.3.2.1. 차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

출처: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2013). 예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지표 개발(pp. 90-92.)

본 연구에서는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를 위해 개발된 평가준거에 대해서 교사들이 어떠한 인식과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영재교육기관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요구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영재교육기관은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예술분야의 영재학교는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술분야와 관련된 영재교육기관은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이 있다. 그리고 영재학급은 지역공동 영재학급과 단위학교 영재학급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도교육청 운영 예술영재교육원, 지역공동 예술영재학급, 단위학교 미술영재학급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시도교육청 운영 예술영재교육원(이하 A영재교육원)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울 대상으로 음악과 미술 분야에 대한 영재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A영재교육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A영재교육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었고 현직 교사들 중에서 선발된 파견교사들이 수업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A영재교육원에서는 미술 분야에 총 20명을 선발하여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A영재교육원에서는 미술영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교사A-1)와 교육원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교사A-2)를 면담대상으로 하였다. 두 교사는 모두 현직교사로, 2년간 A영재교육원에 파견을 나와 있는 상황이었다.

지역의 예술영재를 선발하여 단위학교에서 교육시키는 지역공동 예술영재학급(이하 B영재학급)의 검토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B 고등학교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영재학급의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B영재학급은 지역공동 영재학급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었고, B고등학교 교사들이 수업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B영재학급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미술영재 20명을

선발하여 무상으로 토요일에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B 고등학교 소속의 미술전공 강사(교사B-1)와 미술전공 현직 교사(교사B-2)로, 이들은 모두 현재 B 영재학급의 미술영재학급을 담당하여 수업을 실행하고 있었으나 B영재학급의 교사B-1은 주로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고 교사B-2는 수업뿐 아니라 운영도 담당하고 있었다. 이 교사들은 지난 2008년부터 B영재학급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단위학교 운영 미술영재학급(이하 C영재학급)의 검토의견을 수합하기 위해서, C초등학교 미술영재학급의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 중 영재성을 발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단위학교 미술영재학급인 C영재학급은 C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 후에 영재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기관이었다. C영재학급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미술영재학급 수업과 운영을 모두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 교사(교사C-1)를 면담대상으로 하였다. 교사C-1은 지역교육청에서 위촉을 받아 다른 학교의 미술영재학급 지도교사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면담을 위해서 먼저 2012년 10월 말에 면담 대상자들을 섭외하고, 2012년 11월 1일에 각 예술영재기관의 면담 대상자들에게 이메일로 면담의 목적과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2012년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각 기관을 방문하여 교사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면담은 평가준거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교사들이 평가준거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면담별로 약 2시간 정도씩 이루어졌다.

수집한 면담자료는 모든 내용을 전사하였다. 연구자들은 전사자료에 나타난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검토하면서 의미있는 내용들을 추출하였다. 내용을 추출할 때에는 먼저 개별 연구진이 내용을 검토하고 동료 검증(peer debrief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복수사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먼저 사례 내 분석을 통해 개별 사례가 지닌 특징을 분석한 후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사례들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영재교육기관 유형 사례 내 분석 결과

가. 시도교육청 운영 예술영재교육원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

1) 상황 평가

시도교육청 운영 예술영재교육원(이하 A영재교육원) 교사들은 미술영재교육과정의 맥락을 제공하는 상황평가준거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상황평가준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영재교육의 사회적 요구

이해’, ‘미술영재교육목표에 대한 이해’와 ‘미술영재의 특성 파악’의 평가요소에 포함된 평가준거들이 평가준거로 포함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며 A영재교육원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미술영재교육목표에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제시된 상황평가준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미술영재교육의 사회적 요구 파악 이해’의 평가준거의 경우 사회적 요구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교육기관의 비전과 발전 전략’의 평가요소에서 ‘기관의 비전과 발전 전략 수립 여부’와 ‘기관의 비전과 발전 전략 공유’를 포함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원의 영재교육 비전이나 방향은 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교육기관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교사A-2: 시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전략을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방침이나 계획 같은걸 우선 시교육청에서 받아요. 요번에 선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받고 선발 계획을 나가는 것처럼 그런 거는 시교육청에서 해가지고 다른 것들 모든 것도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시교육청에서 자체 운영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운영 조직의 전문성’의 평가 요소에서 ‘운영 조직의 체계성’, ‘운영 인력의 전문성’과 ‘자문위원회의 활용’을 모두 평가준거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본 교육원의 운영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인력도 선발과정을 통해 위촉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자문위원회의 활용’의 경우 교대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총 10명의 자문 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2번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2) 투입평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평가인 투입평가준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선발기준의 적절성의 평가요소에 포함된 평가준거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선발에서 ‘영재 판별’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서 영재 선발 기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사A-1: 영재성 판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술 같은 경우에는 분분해요. 연구자들 의견도 다르고. 미술 같은 경우는 실기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중략] 그렇게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도 돼야 되고 현장에서도 거기에 맞는 계속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둘째, 선발 방법의 적절성의 평가요소에서 ‘선정추천위원회 구성 및 역할의 적절성’과 ‘다

면평가 다단계 절차 여부'의 평가준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며 A영재교육원에서도 선발 단계 별로 전문성을 지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발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미술 실기 뿐 아니라 영재교육 전문가를 균형 있게 배정함으로써 영재 선발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

교사A-2: 선발에 대한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위촉을 해가지고 하고, 저희가 이제 1차, 2차, 3차로 나뉘져 있기 때문에 1차는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2차는 실기적인 부분이니까 각각 분야에 선생님들 또 오셔가지고 또 그렇게 심사를 하시고요.

셋째,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평가요소인 '교육목표의 적절성', '교육내용의 적절성', '교육방법의 적절성'과 '교육평가의 타당성'에 포함된 평가준거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평가준거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평가준거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사A-1: 평가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평가자가 어떤 부분, 이걸 진짜 창의성이라고 보고서 본인은 생각을 하지만 다른 측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말씀드린 창의성이나 문제해결력이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진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문가 확보 계획 여부', '교강사의 전문성'과 '교강사의 질 관리 방안 수립 여부'의 평가준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현재 A영재교육원에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전문성 있는 교강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우수한 교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교육계획서를 평가하여 교강사가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는지를 본다고 하였다. A영재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강사 질 관리는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강사의 질 관리 방안 수립 여부'의 평가준거의 경우는 미술영재분야 교강사의 특성에 따라 질 관리 방안이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교사A-1: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직 교육 현장에는 없는 전문적인 강사들을 저희가 뽑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연수를 받게끔 한다 라는 것... 아니면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는 그런 초빙을 해가지고 연수를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 이제 참여해서 같이 듣게끔 해서 그런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지원 인력 확보', '교육 시설 확보', '교구 및 자료 확보', '지역문화예술자원 확보'와 '재정확보'에 포함된 평가준거들은 모두 평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특히 '지역문화예술자원 확

보'와 관련된 평가준거의 경우는 앞으로 이러한 측면이 확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지역문화예술자원의 활용이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는 있겠으나 평가준거로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평가준거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3) 과정평가

과정평가와 관련된 평가요소에 포함된 평가준거들에 대해서는 평가준거로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의 충실성'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준거이기 때문에 평가가 가능하며, '교수학습방법의 적절성'과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의 경우 교육과정 평가에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교강사의 전문성 신장 노력',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활용의 적절성', '지역 문화예술 자원 활용의 적절성'과 '예산 집행 시기 및 방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4) 성과평가

교육과정 지속 여부와 개선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성과평가 준거에 대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평가준거와 달리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성과평가준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과물 평가의 평가준거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산출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사A-1: 지금 미술 영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인데 앞으로 시간을 놓고 본다면 넓혀갈 수 있는 분야라고 보거든요. 예술영재 쪽으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어떤 기준이나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나아지지 않을까, 나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평가항목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아니라 들어가기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 평가결과 환류의 평가요소에서 '개선 방안 수립'이나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준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A영재교육원 교사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파견교사이기 때문에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사A-1: 저희는 기본이 2년인데,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 2년 하고도 연장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저희는 원래 학교에서 원래 소속은 되어 있지만 여기 잠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차원이 좀 어려워요. 사실 저희 운영부의 영재교육원장이 지금은 공석이신데 학교 교장선생님이셨어요. 그 분 같은 경우에도 계

속 여기 눌러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려면 지속적으로 거기를 계속 계시면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좀 증재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마지막으로 예산 확보 계획의 평가요소에서 ‘차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의 경우는 교육청에 운영계획을 올리면 회관 자체 일부분의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나. 지역공동 예술영재학급

1) 상황평가

첫째, 지역공동 예술영재학급(이하 B영재학급) 교사들은 ‘미술영재교육의 사회적 요구 이해’, ‘미술영재교육목표에 대한 이해’와 ‘미술영재의 특성 파악’의 평가요소에 포함된 평가준거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준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사B-1: 사회적 요구가 이제 하나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 (중략). 사회적 요구라는 건 어떤 식으로 파악하는가에 따라서 교육목표가 설정이 되고 목표에 따라서 과정 안이 학교별로 기관별로 다 틀린 것 같습니다. ... (중략). 사회적 요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파악하느냐 따라서 그 기관의 교육목표나 과정은 달라지는 거죠.

둘째, ‘교육기관의 비전과 발전 전략’와 관련된 평가준거들인 ‘기관의 비전과 발전 전략 수립 여부’, ‘기관의 비전과 발전 전략 공유’, ‘운영조직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평가준거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미술영재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 조직의 전문성’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자문위원회 활용’에 대해서는 예술계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지역공동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이 기관의 특성 상 교육청의 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교육청 지침이 중요하다든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 기관의 특성 상 모두 자문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사B-1: OOO교육청 지침에는 자문위원회 같은 건 없어요...(중략).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고 학생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영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준영재. 어떤 학자는 준영재라고도 보고 어떤 학자는 영재라고도 봐요, 예고 학생 자체를. 여기에서 다년간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 자문위원일 수도 있어요 저희는.

2) 투입평가

B영재학급 교사들은 선발과 관련된 ‘선발 기준의 적절성’의 평가요소에서 ‘추천 및 선정 요소의 다양성’과 ‘선발 기준의 적절성’이 평가준거로 포함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발

기준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사B-1: 네, 드러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목표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화해서 보실 수는, 애매한 구석이 많을 거라고 전 생각되거든요? (중략)

연구자: 그럼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사B-1: 선발기준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험문제 내고, 저희 교육목표에 맞는 거를 내고, 실기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 들어가셔서 심사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교육목표에 맞게끔 뽑으려고 하시죠. (중략)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준영재와 영재를 다년간 거의 한 20~30년 동안 가르쳐보신 입장에서 미술영재란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가구요. 그거에 시험문제에 맞춰서 평가를 하시고요.

둘째,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평가요소인 ‘교육목표의 적절성’, ‘교육내용의 적절성’, ‘교육방법의 적절성’과 ‘교육평가의 타당성’에 포함된 평가준거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미술 분야에서 ‘적절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셋째, B영재학급 교사들은 인적자원과 관련된 ‘교강사의 전문성’과 ‘지원인력 확보’관련 평가준거들을 포함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부설이라는 특징을 반영하여 학교의 미술전임 교사들이 교강사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원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충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자: 교육 지원 인력이 혹시 보조교사나 상담가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보조교사 부분 없이 교강사분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교사B-2: 원래는 그게 좀 있어서, 지원이 그 전에는 좀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다보니까.

물적 자원 및 재정과 관련된 ‘교육시설확보’에서 ‘교육 공간 및 기자재 확보’의 평가준거는 학교의 시설과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평가 가능하며 평가준거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구 및 자료 확보’의 평가준거는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는 예산과도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사B-1: 집에서 다 들고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의 다 그러세요. 유리공예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준비할 필요도 없는 것까지도, 아이들이다보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다 구해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꺼, 자기 작품 하는데 쓰던 재료. 예산만 충분히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저희가 준비해드리죠. 근데 그게 안되니까.

‘지역문화 예술자원 확보’의 평가준거에 대해서는 B영재학급 교사들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교사B-1의 경우에는 교육청 지침에 포함 여부를 중요시했고, 교사B-2는 평가준거로 포함되어 영재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교사B-1: 교육 상위 기관에서부터 떨어지는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이거 해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할 필은 없죠? 물론 하면 좋겠지만.

교사B-2: 사실은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역을 떠나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의 말 한마디나 그 분들이 보여주는 것 하나가 그 학생 하나하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번거로운 일이라서... 하나하나가 스트레스이기는 한데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섭외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사B-2는 영재학생들에게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 역시 예산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실제 이 교육원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했지만 강사료를 충분히 책정할 수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교사B-2: 봉사 차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위에서 그거를 알고 거기에 적절한 가격을 강의료로 드릴 수 있게끔 해놔야 되거든요. 그걸 뭐 일반 우리 강의했던 강의하는 그 금액대로 똑같이 하라는 건 그건 좀 사실은 좀 떨어지는 거죠. 시설이나 공간도 돈을 주고 좋은 데를 빌릴 수도 있고 자료도 마찬가지인거고, 이게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좋은 공연을 보고 싶고 어떤 영화를 보고 싶고, 아니면 현장학습을 하거나 개인전을 가고 싶다고 해도 입장료가 필요하잖아요.

3) 과정평가

교육과정 운영의 평가영역은 ‘프로그램 운영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준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사B-1은 해마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별화’, ‘수업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노력’, ‘운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노력’ 평가준거들로 평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둘째, B영재학급 교사들은 교수학습방법과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의 적절성’과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성’의 평가준거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술영재 수업이 학습효과를 위해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화된 교수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교사B-2: 왜냐면 서로 보고 느끼는 거,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자기가 자꾸 새로운 걸 생각내내잖아요. (중략) 가르치는 사람도 다른 애들 다양성을 보면서 오거 캐치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걸 또 새로운 걸 파급하고... 오히려 1대1은 참 안되는 애들...

처음부터 떠서 먹이는 거부터 시작해서 가야되는데 영재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별로 인 것 같아요. (중략) 금방 알아차리고 자기가 아 하면서 벌써 쓱쓱쓱 나가는 것은, 혼자만 있었다면 좀 달랐겠죠?

셋째, 자원 활용과 관련된 ‘인적자원 활용의 적절성’과 ‘물적자원 활용의 적절성’을 평가 준거로 포함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강사 전문성 신장 노력’의 평가 준거의 경우 평가준거로 포함될 필요는 있지만, 현행과 같이 전문성 신장이 영재교육 관련 교원연수 이수 여부에 한정된다면 평가 결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사B-1: 평가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근데요, 가능한 한데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 올해요. 000교육청 지침에 의하면 연수를 받은 사람만 수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략) 현실적으로 그건 맞지도 않고요. 일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그런 건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중략) 이 쪽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자체가 영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계속 작업하시고 밖에서도 인정받고 계시고. 일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평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쪽 선생님들한테는 평가 불가능해요.

또한 교원연수를 평가준거로 포함시킨다면 강사의 경우 수업료가 많이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수를 무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4) 성과평가

교육효과와 관련된 ‘결과물 평가’의 평가준거인 ‘결과물 전시 및 발표 실시’ 평가준거는 적절하다고 보았다. 실제로 이 영재교육원에서는 학생마다 몇 개의 대표 작품을 선정하여 도록을 제작하고 전시회도 개최하였다. 그러나 결과물 평가를 완성도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목표에 따라 산출되는 결과물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미술작품 등 산출물 평가’의 평가자가 외부 평가자인지 수업을 실행한 교강사나 내부 평가자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였고, 외부 평가자가 평가할 경우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교사B-1: 영재 같은 경우는 결과물만을 중요하게 여기진 않잖아요. 과정상에서 문제해결력이라든지 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르치는 교사가 개입이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 결과물만 딱 보고 이걸 평가? 제대로 못하죠. (중략) 조소 수업 때도 저는 동양화 전공이다 보니까 수업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 두 분하고 저는 결과물만 보려고 딱 들어갔어요. 처음에 쪽 늘어놓은 걸 보고 점수를 매겼어요. 근데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또 바뀌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선생님들께서는 그 과정을 아시잖아요. (중략) 산출물만 봐서는 도저히 평가가 불가능한

게 미술영재라고 봐요, 전.

둘째, 교육 효과와 관련된 ‘교육의 과정에 대한 평가’의 평가준거인 ‘프로그램 목표 달성 여부’는 평가준거로 활용하는 데 문제는 없으나 ‘학습자 능력향상 여부’는 평가준거로 활용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1년간의 학습 결과를 능력향상으로 보는 점도 무리가 있지만, 향상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영재교육이 학생들의 결과물보다는 과정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사B-1은 영재교육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셋째, B영재학급 교사들은 ‘학습자 만족도’ 평가준거에 대해서 현재도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준거로 포함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평가결과 환류’의 평가준거인 ‘개선 방안 수립’이나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준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사B-1: 이거 제대로 하시는 학교 없을 걸요?

연구자: 이게 혹시 뭐 때문에 힘든가요? 연계성, 담당교사 때문에 그러신가요?

교사B-1: 우선은. 일반학교에서는 실무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연계성이고요.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려면 우선 실무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셔야 하잖아요. (중략) 저희는 이거 평가 받을 수 있어요. 다른 학교 이거 힘들어요, 다 안 좋을 거예요. 일반학교에서는 내년도 것도 허덕허덕 대고 계세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단위학교 미술영재학급

1) 상황 평가

단위학교 미술영재학급(이하 C영재학급) 교사는 미술영재교육의 목표와 관련된 ‘미술영재교육의 사회적 요구 이해’, ‘미술영재교육목표에 대한 이해’와 ‘미술영재의 특성 파악’을 평가준거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 과정에도 최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STEAM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교사C-1: 그런 것[사회적 요구 파악]은 교장선생님이나, 저희 학교는 교장선생님께서 미술을 전공을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봐주시고 알려주세요. 최근에는 STEAM 교육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많이 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수학, 미술, 과학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아울러서 교육과정에 포함을 시켜서 올해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요구가 들어갔다고 할 수 있죠.

둘째, 교육기관의 운영능력과 관련된 ‘기관의 비전과 발전 전략’과 ‘운영 조직의 전문성’이 평가준거로 활용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C영재학급의 경우 기관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세우고 이러한 내용을 학기 초에 학부모 안내 시간 또는 학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 학부모들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C영재학급 교사들은 운영조직의 전문성과 관련된 평가준거들을 활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제시된 평가준거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먼저 ‘운영조직의 전문성’의 평가준거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전공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그리고 출강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주어야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문 위원회의 활용’의 평가준거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교사 뿐 아니라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자문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하였다.

교사C-1: 네.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현실적으로 자문위원회가 지도강사들을 포함해서 될 거예요. 외부의 자문위원회 구성하면 교사, 학부모, 외부인 이렇게 구성을 하라고도 나오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분들 모아서 학교에 위원회 자체가 엄청 많아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줄여라 이런 추세라서 이걸 교사 이외의 다른 분들도 구성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2) 투입평가

C영재학급 교사는 대부분의 투입평가준거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별화 교육 여부’에 대한 평가준거에 대해서는 개별화 교육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면서 현재 C영재학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화 교육은 학생들의 옆에서 개별 지도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별화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교육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교수학습과정안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사C-1: 활동 자체가 지도교사랑 보조교사랑 같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만 아니고 옆에서, 옆에서도 밀착해서 지도를 하는 거니까. 교수학습과정 안에 실제에서는 하는데 교육과정 상에는 명시 안 해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평가의 타당성의 평가요소에 포함된 ‘평가방법의 다양성’, ‘평가준거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환류’의 평가 준거들 역시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교사C-1: 평가라는 게 실제로 교육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시간 안에 평가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기가 정말 어려운 과정 같아요. 따로 떼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면 좋은데 그것을 따로 떼서 교육과정에 포함을 시키면 그게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수업 시수에 별도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교육과정 상에서 이게 수익자 부담이거든요. 거기서는 아마... 지도 교사에게 평가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진 안 할 거예요. 따로 떼서 하기는 어려운 과정 같아요. 그렇지만 지도강사 같은 경우 학기 말에 어쨌든 평가를 해서 줘야하니깐 아이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A3 파일에 매 시간마다 하는 활동들을 포트폴리오화 해서 하거든요. 그럼 그걸 수합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교육 시설 확보’, ‘교구 및 자료 확보’, ‘지역문화예술자원 확보’와 ‘재정확보’의 평가요소에 포함된 모든 평가준거들이 평가 가능한 항목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 시설에서 교육 공간 확보에 있어서는 영재교육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방과 후에 하는 거라 미술실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사C-1: 교육 공간 같은 경우는 따로 미술 영재를 위한 교실이 아니라 여차피 방과 후에 하는 거니까 미술실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과학영재 같은 경우 과학실을 활용하면 되고, 그러면 되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가 대부분 확보가 되어 있어요. 최초로 영재학급을 개설을 하면 지역구청이라든지 예산이 나와서 그런 걸 조금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 학교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구 및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 한 시간당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수업 재료비 그런 걸 산출하면 어느 정도 다 되는 것 같아요.

‘지역문화예술자원 활용’에 대한 평가준거에 대해서는 인력보다는 시설에 대한 활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교사C-1은 해당 학교에 전문성을 갖춘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외부 강사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나 시설의 경우는 미술관이나 아트센터 등 외부 시설을 활용하고 있었다.

교사C-1: 현장 체험학습은 연 2회 이상 가거든요?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가고 여름방학에도 한 번 가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세 번 정도 갔어요. 그것이 저희 OO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나가는 것을 더 선호를 하죠. 학부모 선호를 따라서 백남준 아트센터, 양평에 있는 양평국립미술관, 그다음에 또 덕수궁미술관 이렇게 해서 그런 데를 찾아가죠.

3) 과정평가

제시된 과정평가준거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교강사 전문성 신장 노력’의 평가준거는 현재는 연수를 통해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실적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부모 소통 및 참여 여부’의 평가 준거에 대해서는 현재도 이를 평가하고는 있으나 학부모 참여가 이루어지는 게 많지 않아서 평가점수가 낮게 나온다고 하였다. 학부모 참여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고자 한다면 이 평가 준거에서 학부모가 무엇에 참여하는 것을 평가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 그럼 이 부분은 참여가 저희가 그러니까 점수를 만약에 준다면 참여 여부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면 괜찮겠죠? 점수를 좀 낮게 놓으면...?

교사C-1: 여기서 명시할 것은 교육 활동인지 아니면 교육과정인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 선정하는 것들을 구분해서.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는 교육 활동이 맞겠죠.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 자원 활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교사C-1: 네, 이 지역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교사 입장에서는 이 관내에 있는 지역 것을 이용해야하나? 관내를 벗어나면 지역문화예술자원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문화예술이라는 범위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근방에서 뭐 하는 것은,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것만 포함된다면 점수가 많이 깎이겠죠.

4) 성과평가

‘결과물 평가’의 평가요소 중 ‘미술작품 등 산출물 평가’의 평가준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였다. 특히 주어진 시간 내에 결과물 완성의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결과물 전시 및 발표 실시’의 평가준거는 1학기에 한 번 3시간 동안 다 같이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고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교사C-1: 그게 미술 특성상 아이들 작품이 완성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1학기에 한 번 포트폴리오 작업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세 시간 잡아서 그 시간에 다 같이 하고 아이들끼리 다 같이 발표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매 시간의 평가 보다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연 2회 정도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교사C-1은 C영재학급에서는 교육청에서 수립하는 영재교육 목표를 반영하여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영재학급에서 독자적으로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경우는 학교장 뿐 아니라 담당자가 다른 학교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연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교사C-1: 한계가 될 거예요. 학교장 같은 경우에도 4년에 한 번씩 바뀌고 지도교사도 제가 여기 계속 근무하지만 근무가 자체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이 업무를 맡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이 와서 할 텐데 그게 반영이 되냐 안 되냐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산 확보 계획’의 평가요소에서 ‘차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은 평가준거로 포함될 수는 있으나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하였다. 교사C-1은 제시된 평가준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영재교육기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이러한 평가준거를 미리 알려 주고 이에 따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사C-1: 상당히 좋은 평가 방법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우선 교육과정 만들어놓고 하다가 마지막에 평가가 있어서 되돌아보니까 이런 항목이 있었네? 처음 시도를 해 보면 그런 식으로 돼요. 평가 항목은 나중에 공문으로 접하고 우선 교육과정은 알아서들 짜고. 그러다보니까 막판에 이제 2학기 때 평가 기간이 됐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빼먹었구나, 이 부분을 왜 포함을 안 시켰지? 이런 게 상기가 돼요. 그니까 평가가 있으면 이런 것을 앞부분에 학기 초라든지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준해서 교육과정을 짜라 한다면 충분히 교육과정에 반영을 시켜서 나중에 평가할 때도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2. 영재교육기관 유형 사례 간 분석 결과

가. 상황평가준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

영재교육기관에 따른 상황평가준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담당교사들은 미술영재교육과정의 맥락을 제공하는 상황평가준거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상황평가준거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평가준거에 사용되는 용어를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미술영재교육의 사회적 요구 파악 이해’를 평가준거로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사회적 요구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 요구를 무엇이라고 보느냐에 따라 교육기관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상황평가준거 중 ‘운영인력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영재교육기관에 따라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다. 시도 교육청 운영 예술영재교육원(이하 A영재교육원)의 교사들은 본 교육원의 운영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인력도 선발과정을 통해 위촉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지역공동 예술영재학급(이하 B영재학급)의 경우 미술영재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서 단위학교 미술영재학급(이하 C영재학급)의 교사는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전공분야, 관련 학위, 영재교육 연수 여부, 그리고 출강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주어야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상황평가준거 중 ‘자문위원회의 활용’에 대해서는 영재교육기관에 따라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다. A영재교육원의 경우는 교대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활용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B와 C영재학급에서는 자문위원회 활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B영재학급의 경우는 교육청 지원을 기반으로 하여 특수 목적 고등학교 부설로 운영되는 지역공동 영재학급이라는 특성상 교육청 지침을 따르

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지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해당 교육청에서 자문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침이 없기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술계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학급이기 때문에 이 학교의 교사들이 모두 자문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B영재학급과 마찬가지로 C영재학급의 경우도 단위학교 영재학급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특히 교사 뿐 아니라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자문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나. 투입평가준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

영재교육기관에 따른 투입평가준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첫째, 선발과 관련해서 영재 판별 및 영재 선발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영재교육원의 경우 단단계 평가로 영재를 선발하고 있으나 선발과정에서 영재성 판별 기준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마찬가지로 B영재학급도 합의된 기준에 의해 영재 선발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영재선발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둘째, 투입평가준거에 사용된 용어들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다. ‘선발 기준의 적절성’, ‘창의성 및 실생활 문제해결을 포함한 교육내용 선정 여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내용 조직 여부’, ‘교육방법의 다양성’, ‘교육방법의 적절성’, ‘개별화 교육 여부’, ‘교강사의 전문성’, ‘교강사의 질관리 방안 수립 여부’와 같은 평가준거들의 경우 평가를 준비하는 영재교육기관 뿐 아니라 평가자가 평가준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교강사의 전문성’과 ‘교강사의 질관리 방안 수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좀 더 명확한 평가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강사의 전문성’의 경우 전문성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평가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하고, ‘교강사의 질 관리 방안 수립 여부’의 경우 교강사의 특성에 따라 질 관리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 관리 방안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영재교육원의 교사는 현재 질 관리가 대체적으로 연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직교사가 아닌 강사에게 영재교육 관련 연수들을 받게 한다는 것이 어려우므로, 교강사의 특성에 따라 질 관리 방안이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다른 의견이 제기된 평가준거는 예산 확보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지원 인력 확보’와 ‘교구 및 자료 제공’이었다. A영재교육원과 C영재학급의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어 이 준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으나 B영재학급의 경우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이 사비로 교구나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 등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자원 활용’의 평가준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 가지 의견은 지역문화예술자원 활용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로는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의견은 교육청 지침과의 일관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청 지침에 이러한 평가준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B영

재학급의 교사는 교육 상위 기관 즉 교육청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면 평가준거로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같은 기관에 있는 또 다른 교사는 평가준거로 포함되어 영재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이 교사는 지역문화예술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강의료나 시설 이용료 등이 충분히 책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 과정평가준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

영재교육기관에 따른 과정평가준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 제시된 상황평가준거 및 투입평가준거와 비교해 볼 때 영재담당교사들은 과정평가준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학습자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별화’와 ‘교강사 전문성 신장 노력’의 평가준거에 대해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학습자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별화’의 경우는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로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교강사 전문성 신장 노력’의 경우는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영재학급의 교사들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부설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경우 전문성 신장 노력을 평가함에 있어 영재교육 관련 교원연수 이수 여수로만 한정해서 안 된다고 하였다. 연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 노력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강사들에게 연수를 무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달리 C영재학급의 경우는 교강사 전문성 신장 노력을 보통 연수를 통해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라. 성과평가준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

첫째, 성과평가준거 중에서 ‘미술 작품 등 산출물 평가’에 대해서는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산출물 평가를 평가준거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산출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산출물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외부 평가자가 결과만을 평가할 경우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주어진 시간 내에 결과물 완성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영재교육기관의 교사들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A영재교육원의 교사들은 파견교사여서 이 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B영재학급의 교사는 업무가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된다면 중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C영재학급의 교사는 영재학급의 경우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목표가 먼저 수립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 수립이 어려우며, 담당자가 바뀌거나 전근을 가야 하기 때문에 연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차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다. A영재교육원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관(문화회관)에 부속하고 있어서 차년도 예산 계획을 수립하기는 하지만 따로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C영재학급의 경우는 평가준거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B영재학급의 경우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탐색하기 위해 영재교육기관 유형을 현재 예술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도교육청 운영 예술영재교육원, 지역공동 예술영재학급, 단위학교 미술영재학급의 세 유형으로 사례를 구분하고 수업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평가영역(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성과평가) 별로 구분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평가준거와 관련하여 ‘사회적 요구과약 여부’와 ‘운영인력의 전문성’과 관련된 준거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운영인력의 전문성’의 평가준거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주어야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영재교육기관에 따라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가 다르게 나타난 ‘자문위원회의 활용’ 평가준거의 경우는 영재교육기관 유형을 고려하여 평가준거를 조정하거나 자문위원회의 활용 정도에 차이를 두어 평가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위학교의 영재학급과 같은 경우에는 기관 내부에 전문가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지역의 예술영재를 선발하여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부에 미술교육 전문가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자문위원회를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문위원회 활용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자문위원 풀을 제공하거나 주변 학교들과 협력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투입평가와 관련하여 개발된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평가준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선발 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술영재 판별 및 선발과 관련된 연구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선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된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는 수학이나 과학 분야 등 다른 영재교육 분야와의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강사의 전문성’ 및 ‘교강사의 질 관리 방안’ 평가준거의 경우, 미술영재교육에서는 현직교사가 아닌 화가나 대학교수 등 강사들

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음악이나 무용 등 다른 예술영재분야도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예술영재 교강사의 전문성을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하는 평가준거처럼 영재교육 관련 연수의 이수 여부로 보기보다는, 화가나 대학교수 등의 강사들에게 예술가로서의 능력은 있으나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면 교수법에 대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수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교강사의 전공에 따라 선택하도록(김건희, 2012) 하는 등 예술영재교육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투입평가에서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다른 인식과 요구가 있었던 ‘교육 지원 인력 확보’와 ‘교구 및 자료 제공’ 평가준거들은 예산 확보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평가준거들의 경우는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준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보고하고 승인받는 형식으로, 지역공동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는 형식으로,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예산의 충분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산은 교구 및 자료 제공이나 전문가 확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관 별 차이를 평가준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과정평가준거 중 ‘교강사 전문성 신장 노력’의 경우는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영재학급과 같이 특수목적 고등학교 부설로 영재교육을 실행하는 경우는 전문성 신장 노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영재교육 관련 교원연수 이수 여부로 한정하기보다는 미술 실기 활동 등 다양한 전문성 신장 노력을 평가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사를 많이 활용하는 영재교육기관의 경우는 연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전문성 신장 노력을 위한 지원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준거 중 ‘미술작품 등 산출물 평가’와 ‘학습자 능력 향상 여부’에 대해서는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산출물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출물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의 경우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평가준거로 포함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담당교사가 과견교사이거나 교장 선생님 또는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근무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영재교육 업무가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차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의 경우는 영재교육기관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었으므로 영재교육기관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준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를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평가준거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발된 평가준거와 관련된 내용이 시도교육청의 미술영재교육 지침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미술영재를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의식과 실험정신을 강화시키도록 특별한 교육과정

을 제공해야 한다(김정희, 2007).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의 미술영재교육기관 운영 및 평가와 관련된 지침에 미술영재교육의 특성이 잘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영재교육기관 유형의 특성과 여건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예산의 경우 기관 유형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예산이 충분한가의 문제는 영재교육의 질과 관련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예술영재교육의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미술영재교육의 경우 미술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교구나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교육비용이 발생한다(이현주, 이미나, 이화선, 2010). 예산이 부족하여 교강사가 사비로 교구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 지역공동 영재학급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교구나 재료비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영재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최근 영재교육에 대한 수익자 부담 시행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재교육은 국가의 인재 양성 차원에서 국가로부터의 충분한 예산 지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개발된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준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가준거를 활용하여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개발된 평가준거를 활용하여 영재교육기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준거의 의미를 명확히 규명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배점 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술영재 선발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영재와 차별성을 가지고 미술영재의 특성을 어떻게 판별하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선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미술영재 판별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미술영재교육을 실행했던 시기부터 계속되어오고 있으나(김정희, 2003; 김혜선, 2004; 백중렬, 2008; 김건희, 2012) 아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술영재교육에 있어 교·강사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술영재교육에 있어 전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관 특성을 고려한다면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준거와 기관 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준거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개발된 평가준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와 평가준거에 대해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가 판단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교육과정 평가가 교수·학습이나 수업계획의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정이 계획되고 실행되고 성과를 산출하는 과정까지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모형의 기본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평가목적이 무엇인지, 각 평가준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평가준거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뷰한 교사들 역시 평가준거를 문서상으로도 보았을 때보다 직접 설명했을 때에 더 잘 이해했다. 이는 평가준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서상으로도 평가준거를 상세히 설명하고 교사연수를 통해 평가준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건희 (2012). 문화예술교육정책 안에서 미술영재의 선발전황과 개선방향. **문화정책논총**, 26(2), 152-173.
- 김정희 (2003) 미술영재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미술가와 미술영재아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17, 48-78.
- 김정희 (2007). 미술영재교육과정 모형에 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1(2), 61-82.
- 김정희, 강병직 (2011). **미술영재교육학**. 서울: 학지사.
- 김혜선 (2004). 미술영재교육 실태조사 연구. **미술교육논총**, 18(3), 81-102.
- 백경미 (2012). 한국 미술영재교육 현장의 요구. **기초조형학연구**, 13(3), 153-161.
- 백중렬 (2008). 초등미술교육의 현황과 미술영재의 육성방안. **미술교육논총**, 22(2), 211-228.
- 서예원, 이재분, 박지은 (2011).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평가 및 중장기 전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서예원, 이재분, 유경재, 정영옥, 박지은, 이경숙 (2012).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서혜애, 조석희, 이은아, 한석실, 윤초희 (2003). **영재교육기관 평가체제 개발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경진 (2012). 예술영재 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예술영재 교육과정 평가모형 개발. **교육과정평가**, 15(2), 217-240.
- 이경진, 김선아 (2012).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이론적 기초. **영재교육연구**, 22(3), 639-662.
- 이경진, 김선아, 강병직, 최진영 (2012).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 개발. **영재교육연구**, 23(2), 193-213.
- 이정규, 김미숙, 박춘성, 이승희, 이행은 (2007). **영재학급·영재교육원 운영실태 및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현주, 이미나, 이화선 (2010). 예술영재의 개인 및 환경적 특성 탐색 - 음악, 미술, 무용영재를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20(2), 547-570.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13). **예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지표 개발**.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Clark, G., & Zimmerman, E. (2008). **미술영재교육: 이론과 실제**. [홍소영 역]. 서울: 미진사. (원본출간년도: 2004).
- Csikszentmihalyi, M. (2003). **창의성의 즐거움** [노혜숙 역], 서울: 북로드. (원본출간년도: 1996).
- Davis, G. A., & Rimm, S. B. (2004).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5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Fitzpatrick, J. L., Sanders, J. R., & Worthen, B. R. (2011). *Program evaluation: Alternative*

- approaches and practical guidelines* (4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Gagné, F. (2003). Transforming gifts into talents: the DMGT as a development theory. In N. Colangelo & G. A.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3rd ed.) (pp. 60-74). Boston, MA: Allyn & Bacon.
- Provus, M. M. (1971). *Discrepancy evaluation*. Berkeley, CA: McCutchan.
- Renzulli, J. (1999). What is this thing called giftedness, and how do we develop it?: A twenty-five year perspective.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3(1), 3-54.
- Renzulli, J. S., & Ward, V. S. (1969). *Diagnostic and evaluative scales for differential education for gifted*. Storrs, CT: University of Connecticut,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 Scriven, M. (1967). The methodology of evaluation. In R. E. Stake (Ed.), *Curriculum evalu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Monograph Series on Evaluation, No. 1, pp. 39-83). Chicago: Rand McNally.
- Stufflebeam, D. L. (2005). CIPP model (context, input, process, product). In S. Mathison (Ed.), *Encyclopedia of evaluation* (pp. 60-65). Thousand Oak, CA: Sage.

= Abstract =

Teachers' Responses to Curriculum Evaluation of Gifted Education in Visual Art: Case Study of Three Types of Institution for Gifted Education

Kyungjin Lee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Jinyoung Choi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eachers' responses to curriculum evaluation of gifted curriculum in visual arts. Especiall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of the responses among three types of institutions for gifted education (institution for gifted education, community based gifted classroom, and school based gifted classroom). Teachers from these three types of institutions for gifted education were interview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eachers viewed that consideration is needed for 3 criteria. Teachers from different institutions showed different responses to 'professionalism of working personnel' and 'utilization of advisory committee'. Second, teachers viewed that 13 criteria need consideration. Teachers from different institutions showed different responses to 'support personnel for gifted education' and 'educational equipment and resource supply'. Third, teachers viewed that consideration is needed for 2 criteria. Teachers from different institutions showed different responses to 'effort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of instructors'. Fourth, teachers viewed 4 criteria need consideration. Teachers from different institutions showed different responses to 'budget planning for next year'. Based on the finding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he evaluation criteria for the gifted curriculum in visual arts were discussed.

Key Words: Gifted Curriculum in Visual Arts, Curriculum Evaluation, Evaluation Criteria

1차 원고접수: 2013년 7월 15일
수정원고접수: 2013년 8월 27일
최종게재결정: 2013년 8월 27일